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3. . .
발 의 자	박세채 의원 외 18명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박세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3. . . .
발 의 자: 박세채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신용하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의원(19명)

1. 제안이유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함으로써 생태하천의 수질 정화에 이바지하고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무상 공급, 공급관리 및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농업기술센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환경정책과: 비용추계서(붙임)
- 다. 부서검토: 농업기술센터,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의견제출(붙임)
- 라. 기 타: 해당없음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함으로써 생태하천의 수질 정화에 이바지하고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미생물”이란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에 이용되는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란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미생물의 지속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친환경 미생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목표와 추진방향
2. 친환경 미생물 시험연구사업
3.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

4. 친환경 미생물 이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친환경 미생물 배양소의 운영과 관리) ①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는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② 시장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무상공급) 시장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 및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관내에서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시험용 및 실증재배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3. 수질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7조(공급관리) 시장은 친환경 미생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친환경 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친환경 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제8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받은 자가 판매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친환경 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환경 미생물 배양소의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운영된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 미생물 생산대장

○○○ 생산

구분	배양일	도말	균수	용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곰팡이 생산

구분	1L 배양일	용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관계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어업 용수, 대기 등 농어업 자원을 보전하고 토양 개량, 수질 개선 등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어업 용수 오염 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6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
2. 자연생태·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3.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6.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복원·복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

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 「물환경보전법」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생략>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생략>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기술개발과

조 례 명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제13조 ▪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 물환경보전법 제6조 ▪ 지방자치법 제13조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제4조) ▪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의 운영과 관리(안 제5조) ▪ 공급 대상 및 공급의 관리(안 제6조~제8조) ▪ 시행규칙(안 제9조)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과 생태하천 수질개선을 도모 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효과 : 친환경 미생물의 수요 증가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산 및 공급 기준안 마련을 통하여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및 환경정화에 기여 ○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잉여 생산에 따른 잔여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정화용 미생물의 활용에 대한 정확한 수요 파악 및 주문 생산 필요 ▪ 관련 법령이 상이하고 각 분야별 활용 미생물의 안전한 생산을 위해 수요량의 증가 시에는 생산시설의 분리가 필요 ▪ 농·축산용 미생물과 환경정화용 미생물의 소관부서가 상이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기준안 마련 필요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환경정책과

조 례 명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이 농업인, 농업법인, 축산업자일 경우<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진흥법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5조(설치), 제17조(소관사무)▪ 대상이 일반시민, 시민단체일 경우는 근거법령 없는 것으로 판단됨.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시행계획의수립) 제1호 변경 필요 <p>당초: 1.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목표와 추진방향</p> <p>변경: 1. 친환경 미생물 연간 지역내 수요조사, 연간 생산공급계획 수립</p>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조례안에 무상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의 사용용도를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p>예: 생활환경에서의 악취제거, 생활환경에서의 화초재배 등</p>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효과 : 시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악취민원저감 효과○ 소요예산 : 25,000천원 정도(기간제근로자 1명)<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용추계서 첨부○ 문 제 점 : 기간제근로자(예산) 확보 필요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환경관리과

조 례 명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친환경보전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물환경보전법」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무상 공급, 공급 관리 및 제한에 관한 사항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농업 실천 및 축사 악취제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봄○ 현재 축산·농업 농가용 미생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활용법 등 이론·실습 교육도 병행 중이므로 일반시민들을 위한 생활용 미생물에 대한 생산·공급 및 교육도 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원화하여 추진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효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농·축산업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가축분뇨 악취 문제 해결에 도움▪ 친환경 용품 사용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수질 정화에 도움○ 소요예산 : 없음○ 문 제 점 : 없음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기존 농·축산용 미생물 생산 이외에 환경정화용 미생물 생산비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 환경교통국과 협의를 통하여 공급방식 선정 후 공급시스템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환경정화용 미생물 균주의 선정과 생산·공급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을 환경교통국과 추구 협의를 통하여 수립 후 비용 산출이 가능하여 구체적인 재정의 추계는 어려움.

4. 작성자

- 기술개발과 과학영농팀 이예슬(☎480-4283)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기간제근로자 계약체결(1명)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소계(a)						
세출	○기간제근로자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						
	소계(b)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 총 비용(a-b)							125,000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민 간							
기 타							
합 계							

5. 부대의견: 생산된 미생물을 수요처인 읍면동에 배부(2회/월, 15일마다 배부)
 - 읍면동에 냉장시설(냉장고 용량 200리터 정도) 배치 필요

6. 작성자 : 환경정책과 생태환경팀 최명식(☎480-5261)